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13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전재수·안규백·홍익표

최기상 · 김영배 · 최인호

김정호 • 이장섭 • 신영대

윤영찬 • 이용우 • 박용진

이병훈 · 남인순 · 양기대

민홍철 • 김두관 • 김승남

박재호 • 송기헌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 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및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①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	
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	
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	
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
	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및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u>명단</u>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